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

2018. 2. 8

관계부처 합동

목 차

I. 사회적경제의 개념 및 지원체계	1
II. 사회적금융의 개념·현황 및 평가	3
III. 사회적금융 해외사례	7
IV. 사회적금융 활성화 추진방안	10
1. 기본 방향	10
2. 사회적금융시장 조성 지원	12
3. 사회적금융 공급확대	15
4. 사회적금융 인프라 확충	22
V. 추진 일정	25

I. 사회적경제의 개념 및 지원체계

- 사회적경제는 구성원간 협력·자조를 바탕으로 재화·용역의 생산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의 경제적 활동을 의미
 - 경제활동이라는 측면에서는 시장경제와 유사하나, 연대와 협력, 민주적 운영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점에서 차이
 - 일자리 부족, 양극화 확대, 복지수요 증대 등 정부가 모두 감당하지 못하는 사회문제를 민간 스스로 해결
-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는 주요한 법·제도적 체계 등을 갖추는 도입기를 지나 고용·매출 등 양적으로 성장하는 단계에 진입
 - 개별 부처별로 취약계층 고용확대, 자활지원 등 목적으로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을 정의하여 다양한 지원을 실시중
 - 정부·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정책자금·보증을 제공하고 법인세 등 세제 혜택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혜택을 부여

<우리나라의 주요 사회적경제기업 유형·현황>

구분 (시행)	사회적기업 (2007년)	협동조합* (2012년)	자활기업 (2012년)	마을기업 (2010년)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목적	취약계층 고용 창출, 서비스 제공	조합원 권익 향상, 지역 사회 공헌	수급권자 등의 자활 지원	지역환경 개선, 지역공동체 활성화
근거법률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	기초생활보장법	행안부 지침
개수('16末)	1,713개	10,640개	1,149개	1,446개

* 농협, 수협, 신협, 생협 등 특별법에 의한 8개 개별협동조합도 사회적경제기업 범주에 포함

- 사회적경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0.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참고)을 마련·발표
 -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금융 접근성 확대'를 목적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금번 사회적금융 활성화방안을 마련

참고

사회적경제 활성화 목표 및 발전전략

- ◇ 사회적경제가 포용성장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패러다임 전환 및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Two-Track 발전전략 마련
- ① (인프라 구축) 사회적경제 성장단계별 특성에 맞는 시스템 구축
 - ② (진출분야 확대) 사회적경제 파급효과가 큰 분야 집중 육성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한 협력성장 및 포용성장 견인

목표

사회적경제의
역량 제고

일자리 창출 등
성장동력 확보

공동체 복원 등
사회통합

추진 전략

성장 인프라 구축

진출분야 확대

정책 과제

통합 지원체계 및
정책방향 확립

* 기본법 제정 및 컨트롤타워 구축

금융접근성 제고

* 공적금융 확대 및 투자환경 개선

판로확대 지원

* 공공조달 확대 및 판로개척

인력양성 체계 강화

* 전문인력 양성시스템 구축 등

사회서비스 분야 진출

주거환경 분야 진출

문화예술 분야 진출

프랜차이즈 분야 진출

소셜벤처 분야 진출

지역기반 연계 분야 진출

추진 체계

민관협업 및 지역주도의 추진체계 구축
공공부문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

II. 사회적금융의 개념 · 현황 및 평가

1 사회적금융 개념

□ 사회적금융(Social Finance)은 사회적 가치(Social Value) 실현을 재무적 이익(Financial Return)과 함께 추구하는 금융

○ 협의로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투자·융자·보증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활동을 의미

*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및 사회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사회적경제활동(공공성이 큰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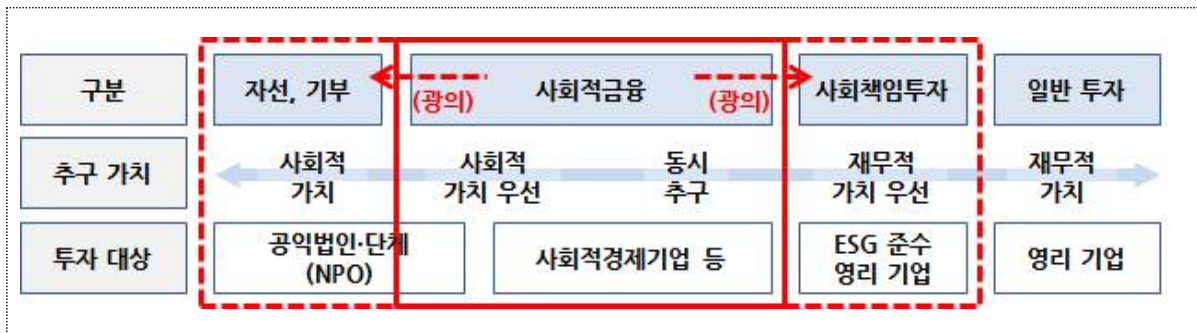
- 임팩트투자(Impact Investing)는 상업성에 기반을 두고 투자 방식으로 사회적금융을 수행하는 비교적 발전된 형태를 의미

○ 광의로는 추후 회수를 전제로 하는 투자·융자·보증뿐 아니라 보조금(Grant)과 자선행위(Philanthropy)도 포함하거나

- 사회적 가치를 넓게 적용하여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우수 기업에 투자하는 사회책임투자(SRI)까지 포괄

➔ 금번 방안은 사회문제의 효율적·효과적 해결을 위해 사회적경제 기업 등에 투자·융자·보증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에 중점

<사회적금융 개념>



□ 우리나라의 현재 사회적금융은 정부·공공재원을 중심으로 기존 중소기업·서민 정책금융 지원체계 내에서 수행중(☞참고)

○ 미소금융*과 중소기업정책자금 중 일부를 사회적기업에 대출 ('16년중 각각 9.5억원, 106억원)

* 미소금융은 민간사업수행기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대출 실행

○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사업을 실시중이며, 서울시의 경우 별도 기금("사회투자기금")을 조성하여 저리융자 ('16년중 207억원)

○ 신보와 지역신보에서 사회적기업·협동조합에 대해 일반기업에 비해 보증비율을 높인 특례보증 제공 ('16년중 각각 46억원·94억원)

○ 투자방식으로는 모태펀드내 사회적기업 펀드를 별도조성하여 민간자금과 매칭을 통해 사회적기업에 투자 ('16년중 15.5억원)

□ 민간재원을 활용한 자발적인 사회적금융은 다양한 시도가 있지만 절대적인 규모는 크지 않음

○ 특정 대기업은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사회적기업 및 전문 인력 육성*과 함께 사회적금융 관련 사업을 실시

* '13년 KAIST 사회적기업가 MBA 과정 신설 등

○ 일부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은 공공자금外 민간부문에서 재원을 조달하여 상업적 원리에 기반한 임팩트투자를 수행*

* 자금지원뿐 아니라 재무·회계, 경영, 마케팅 등에 대한 컨설팅을 병행함으로써 사회적경제기업의 성공가능성을 제고

○ 사회적경제단체가 공제형태의 자조기금을 조성하여 회원사인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도 존재

참고

사회적금융 관련 공공부문 사업현황

구분	사업명	내용	사업구조
대부	서민금융진흥원 ('0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기업에 임대차보증금, 시설·운영자금 등을 대출 (대상)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한도) 1억 / (금리) 2~4.5%(사업수행기관별 상이) (상환) 원리금 분할상환(사업수행기관별 상이) (규모) '16년 9.5억원 ('08~16년간 204억원) 	
	중소기업정책자금 ('1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사회적기업 포함)에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융자 / (대상)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한도) 45억원(수도권 이외 기업은 50억원) (금리) 정책자금기준금리에 연동(약 3%대) (절차) 중진공 접수 및 대상 결정 → 중진공(직접) 또는 금융기관(대리) 신용·담보부 대출 (규모) '16년 106억원 ('10~16년간 304억원)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1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융자 프로그램 운영 (대상)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한도) 2억 / (금리) 2% / (기간) 최대 5년 (사후관리) 반기마다 재무·사회지표 모니터링 (규모) '16년 207억원 (총기금규모 703억원) ※ 기금 재원으로 사회적기업 융자 외 소셜하우징 융자,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 융자, 사회적 프로젝트 융자 프로그램도 운영 	
신용보증	정책성 특례보증 ('1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신용보증 공급 (대상) (예비)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한도) 1억원 이내 / (상환) 5년 이상 (보증비율) 100% / (보증요율) 연 0.5% (규모) '16년 46억원 ('12~16년간 211억원) 	
	사회적기업전용 특례보증 ('1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기업에 특화된 특별보증 운용 (대상/한도) 사회적기업(4억원), 협동조합(5천만원) (보증비율) 영리 기업·조합 90%, 비영리 기업·조합 100% / (보증요율) 연 0.5% 이내 (상환) 5년 이내(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규모) '16년 94억원 ('12~16년간 309억원) 	
투자	사회적기업 모태펀드 ('1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자본시장을 활용하여 사회적기업에 투자 (규모) 제1호 조합(42억원, '11년~, 투자종료), 제2호 조합(40억원, '12년~, 투자종료), 제3호 조합(60억원, '13년~, 투자종료), 제4호 조합(40억원, '15년~) (대상)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청년 등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참가자 등 (규모) '16년 15.5억원 	

□ 우리나라의 사회적금융은 ①태동단계로서 ②절대적인 자금 공급량이 부족할뿐만 아니라 ③관련 생태계도 미형성된 상황

① 사회적금융시장이 구축된 英·美에 비해 우리나라는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태동단계(“조화되지 않은 혁신”☞참고)에 해당

② 성장기에 들어선 사회적경제의 발전정도*(자금수요)에 비해 금융 공급이 부족한 사회적금융의 과소공급 상태가 지속**

* 사회적기업 평균 매출액(억원) : ('13) 11.7 → ('14) 12.0 → ('15) 13.4 → ('16) 15.8

** 사회적기업 자금조달('15, 고용부): 정부보조금(51.4%), 특수관계인 차입(43.6%)

- 공공부문 주도로 자금공급을 확대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증대되는 사회적경제의 자금수요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황

- 사회적경제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여, 만기(인내자본 희망), 지원수단(융자·보증에 편중) 등에서 수급간 미스매치도 발생

③ 사회적금융중개기관 등 생태계 구축이 미흡하고, 사회적 성과 평가 등 관련 시장 인프라도 미비(→거래·정보비용이 큼)

- 사회적금융을 복지제도로 혼동하거나 기대수익이 낮은 반면 위험은 높다는 인식 등으로 민간의 자율적 참여가 저조

※ (참고) 사회적금융시장의 발전단계

조화되지 않은 혁신 (우리나라)	시장 구축 (英·美)	시장가치의 포착 (英·美의 5~10년후)	시장 성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 요구와 정책 인센티브에 반응하여 산발적인 기업활동이 발생 ◦ 언뜻 보면 성숙된 시장에서 각각의 혁신가들이 새로운 사업모델을 추구 ◦ 시장의 상단을 제외하면 시장경쟁이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의 중심이 발현하기 시작 ◦ 거래비용을 낮추고 더 많은 활동을 지원하는 시장 인프라가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시장참가자가 사회투자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성장이 일어남 ◦ 시장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이전 인프라에 투자한 고정 비용을 회수할 수 있음 ◦ 조직들이 보다 전문화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이 정상상태에 도달, 성장이 둔화 ◦ 일부에서는 활동의 축소가 일어나기도 함

* 출처: Monitor Institute(2009), "Investing for Social & Environmental Impact"

III. 사회적금융 해외 사례

- ◆ 영국·미국·일본 등에서는 정부재정 및 공공재원(휴면예금)을 바탕으로 사회적금융 생태계를 구축(☞참고)
- ◆ 협동조합의 전통이 강한 유럽에서는 민간 중심의 사회적금융 지원체계가 자생적으로 발달

1. 정부재정·공공재원(휴면예금) 중심의 지원체계

가. 영국의 Big Society Capital (“BSC”)

- 지속가능한 사회투자시장을 형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12년 사회투자도매은행(Social Investment Wholesaler)인 BSC를 설립
 - 휴면예금 4억 £와 4대 대형은행의 2억 £출자로 재원(6억 £)을 조성하고, 정부 관여를 최소화*하여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
 - * 최대주주인 Big Society Trust의 이사회(이사 8인으로 구성, 영국 내각부 이사 1인 포함)는 BSC 규정(보수·인사규정) 개정과 이사 선임권만 행사
 - BSC는 민간자금과 매칭투자를 전제로 사회적금융중개기관(SIFIs)을 통해 간접지원 → 생태계 구축 및 시장조성 기능 수행

나. 미국의 지역개발금융기관 기금 (CDFI Fu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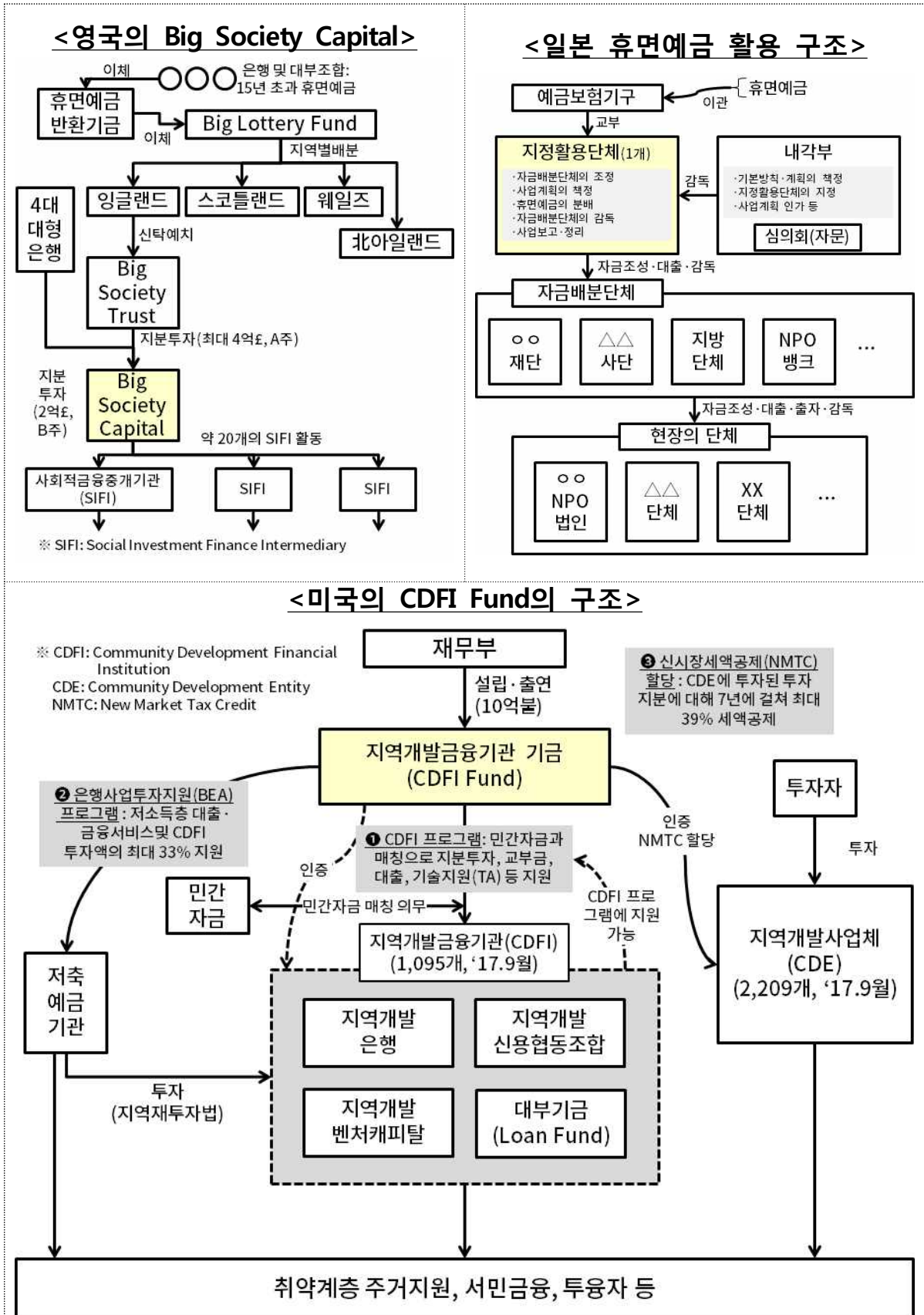
- 재정으로 기금(CDFI Fund)을 조성, 기금에서 인증받은 지역개발금융기관(CDFI)을 통해 저소득지역 개발*을 간접 지원(‘95~)
 - * ① CDFI 프로그램: CDFI를 통해 교부금, 대출, 지분투자 등 집행, ② BEA(Bank Enterprise Award): 은행의 CDFI 투자액 일부를 보전, ③ 세제지원(NMTC) 등
 - CDFI는 민간자금 매칭방안 등을 마련하여 CDFI 프로그램에 응모 → 기금은 엄격한 경쟁을 통해 지원대상 CDFI를 선정

다. 일본의 휴면예금을 활용한 공익사업 지원체계

- 일본은 최근 휴면예금을 활용하여 비영리재단을 통해 사회공익 활동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중(‘16년 법제정 → ‘19년 지원 착수)

참고

영국 · 일본 · 미국의 사회적금융 지원 체계



2. 민간 기반의 자금지원

가. 협동조합금융 방식

□ 협동조합이 발달한 캐나다·스페인 등에서는 신용협동조합(협동조합은행), 협동조합 연대기금 등의 금융지원체계가 발달

① (加) 데잘랭그룹*은 연대경제금고(Caisse d'économie solidaire, '71)를 설립하여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에 사회적금융을 제공

* 1900년 신용협동조합인 인민금고에서 출발, 금고간 연합·합병, 보험·신탁 등 사업 다각화(40's~) 및 금융그룹화('90s~)를 거쳐 성장한 총자산 2,584억\$의 신탁금융그룹

② (西) 몬드라곤 협동조합그룹의 라보랄쿠차(협동조합이 조합원인 신탁, '59)는 그룹내 조합간 자금 재분배 및 사업 총괄조정 기능을 담당

나. 사회적은행 방식

□ 네덜란드·이탈리아 등에서는 예금 형태로 자금을 조달하여 사회적기업 등에 투융자하는 사회적은행이 활동

① (蘭) 트리오도스은행(Triodos Bank)는 은행업 인가를 받아('80), 저리로 조달한 예금으로 사회적기업, 환경기업 등에 신용을 제공

* 총자산 91억€, 예수금 80억€, 대출 57억€, 세전이익 0.4억€('16末 기준)

② (伊) 방카에티카(Banca Popolare Ethica, 신탁, '99)는 엄격한 윤리성을 갖춘 비영리조직과 사회적경제를 대상으로 신용을 제공

다. 기타

□ 소액 다수의 투자자(기부자)와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 프로젝트 등을 중개하는 크라우드펀딩 방식의 지원체계가 존재*

* 미 KIVA, 영 SSE(Social Stock Exchange) 등이 이에 해당

□ 비영리단체·사회적기업에 경영 지원 및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의 성장과 사회문제 해결을 촉진하는 벤처자선가*도 활동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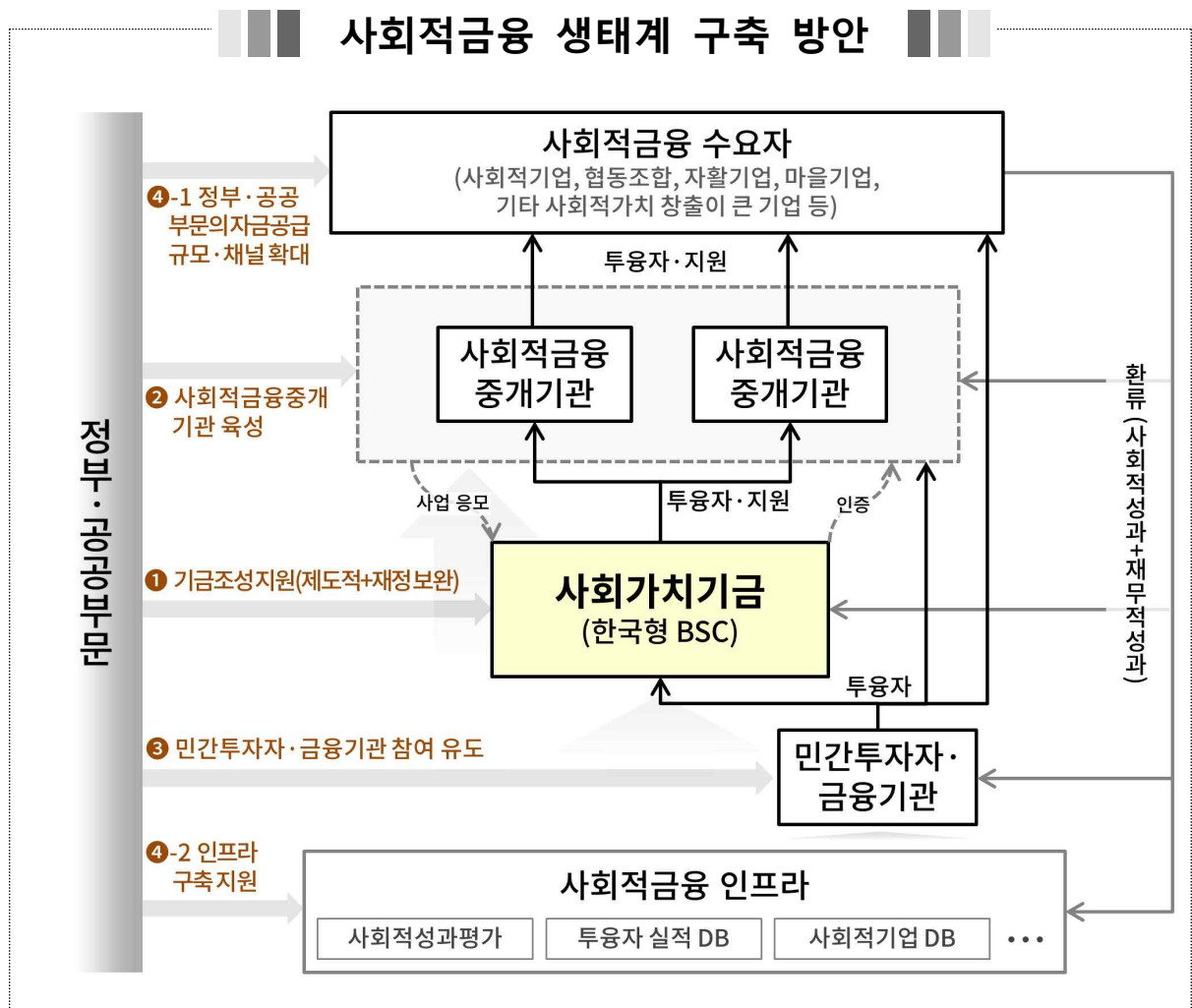
* 전통적인 기부·후원 등 비영리금융 수단부터 대출·투자·메짜닌, 구조화 금융까지 다양한 금융수단 제공 → 영국의 Impetus-PEF, 일본의 일본벤처자선기금(JVPF) 등

IV. 사회적금융 활성화 추진방안

1 기본 방향

- ① 지속가능한 사회적금융시장 조성을 위한 촉매제로서 자금의 도매 공급기관인 사회가치기금(가칭, Social Benefit Fund) 설립을 지원
 - ‘자금공급→매출액↑→자금회수→자금공급↑’ 등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해 **자금공급과 인프라 구축**에 중추적 역할 수행
 - 민간이 중심이 되어 사회문제를 해결한다는 사회적경제의 기본 취지를 감안, **민간주도로 설립·운영되도록** 하고 정부는 **간접 지원**
- ② 투자자-사회적경제기업간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해 금융과 사회문제에 전문성이 있는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을 육성
 - * 1) 투자자와 사회적경제기업간 사이에서 거래·정보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금융 중개를 주된 업무로 하는 기관으로, 2) 투자대상 발굴, 3) 관련 금융상품 개발 등 수행
 - **사회가치기금**은 객관·투명한 절차에 따라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중개기관을 통해 자금을 간접 지원
 - 기존 중개기관의 역량강화와 신규 중개기관의 출현을 위해 체계적인 **사회적금융중개기관 육성방안 마련·추진**
- ③ 엄격한 선관주의의무 준수가 필요한 민간투자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인프라 구축과 인센티브 부여 추진**
 - **사회·재무적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금융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평가체계 마련
 - 여타 투자기회에 비해 낮은 기대수익률*을 보전할 수 있도록 **세제 등 인센티브 부여**
 - * 투자자는 사회적경제가 창출한 사회적 가치를 자신의 투자수익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사회적금융의 기대수익률이 낮다고 인식

- ④ 사회적금융시장 구성에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임을 감안, 우선 정부·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
- 정부·공공부문의 사회적금융 지원채널과 규모를 **확충**하고 **신협·새마을금고**의 자발적 참여를 지원
 - 투자·대출·보증 등 다양한 지원수단을 확보하여 성장단계에 맞게 자금을 지원하되, 추후부실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
 - 정부·공공부문의 자금공급 과정에서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의 참여를 **확대**하고 투융자실적 DB 등 인프라 구축 병행 추진
- ⑤ 사회적경제 성장·발달을 위해 인력·판로·보조금 등 여타 지원 방안과 사회적금융 방안의 유기적 연계강화 추진



◆ 사회적금융시장의 3대 플레이어로서 사회가치기금의 조성, 사회적 금융중개기관 육성 및 민간투자자·금융기관 참여 확대 추진

가. 사회가치기금(가칭, Social Benefit Fund, “한국형 BSC”) 설립 지원

□ 민간 자율적으로 사회적금융 민간기금* 설립 추진

*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통해 사회가치기금의 법적 설립근거 명시

-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출자 및 기부 등으로 주요 재원 확보
- 기금 운영주체는 출자·대출·출연·보증 등 다양한 사업을 탄력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형태를 채택
- 정부로부터 독립성, 투명성, 책임성,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운영주체의 기금운용 원칙과 소유·지배구조 마련

□ 사회가치기금은 사회적금융중개기관 등을 통해 자금을 간접 지원하는 등 도매기금(wholesaler)으로서 역할을 수행

-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은 사회적경제기업에 주로 투·융자하되,
- 일정한도내에서 사회적가치 창출이 큰 일반 중소기업, 낙후지역 개발사업 등도 투·융자대상에 포함

□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의 규모·자금수요,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5년간 3천억 규모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조성

- 성급한 규모 확대보다는 공급·회수 등 성공사례 창출에 주력

□ 정부와 지자체는 사회가치기금이 자율적으로 설립·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및 재정 보완을 지원

- 정부·지자체에서 사회가치기금에 출연을 추진*하고 미소금융 재원에서도 출자·출연이 가능하도록 서민금융법 개정** 추진

*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통해 정부·지자체의 사회가치기금 출연·출자 근거 마련

** ① 법률의 목적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명시, ②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사업"(→민간기금에 출연·출자)을 업무로 규정

- 사회가치기금의 독립성 확보차원에서 정부·지자체에서의 출연·출자는 민간재원 이내의 범위에서만 허용

- 정부·지자체 등에서 시행중인 사회적 금융 관련 기존 사업들을 점진적으로 사회가치기금에 이양 추진

- 기금설립·운영에 필요한 제도마련, 민간재원 확보 및 다양한 지원수단 활용 등을 위한 인센티브 강구 등

- 민간의 자율적인 논의와 자금모집 등을 통해 기금설립을 추진해 나가되, 정부도 기재부를 중심으로 설립 지원

- 민간주도 「**사회가치기금(Social Benefit Fund) 추진단**」 설립

- 사회적경제 연합단체 추천자, 사회적경제 금융기관*, 사회적금융 전문가, 투자역사가 있는 기관 대표자, 법률가 등으로 구성

* 예)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

- 정부(기재부 등)는 추진단 요청시 논의에 참석
- 추진단은 사회가치기금 설립을 위한 세부사항 검토, 정부에 대한 제도 개선 건의, 자금 모집 등의 활동 전개

- 국제 **임팩트투자 민간협의체(GSG*)** 가입 지원을 통해 미국·영국 등의 사회적금융 선진사례를 도입·자문하는 **창구로 활용**

* **Global Social Impact Investment Steering Group** : '13. G8 정상회의시 영국 주도로 설립한 **임팩트투자 활성화 민간협의체**(16개국 가입중), 우리나라에서는 GSG 가입을 위한 민간의 **임팩트투자자문위원회**가 출범('18.2월)할 예정

- 올해안에 사회가치기금 설립·운영 개시를 목표로 추진

- 2월초 사회가치기금 추진단 출범과 운영을 적극 지원

나. 사회적금융중개기관 인증(Certification)제도 도입

- 사회가치기금은 금융중개기관의 사회적금융 지원경험·실적* 등을 감안하여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를 시행
 - * 인증제도 도입 초기에는 사회적금융협의회에서 구축한 중개기관 DB를 활용하고, 이후에는 매년 중개기관 현황을 조사하여 업데이트
- 인증대상은 사회적금융을 주로 수행하는 중개기관뿐 아니라 사회적금융을 부수적으로 수행하는 일반 금융기관*도 포함
 - * 사회적금융에 전문성 또는 의지가 있는 신기술사, 벤처캐피탈(VC), 신협 등
- 인증요건은 법적형태, 소유구조, 사회적금융 경험·전문성 등 다양한 요소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설정
- 사회가치기금은 인증받은 사회적금융기관에게 다양한 사회적금융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
 - 사회적금융기관은 사회가치기금이 공모하는 사업에 응모하거나, 스스로 사업을 제안하여 민간기금에 대해 자금지원* 요청도 가능
 - * (예시) 사회적금융 관련 투융자를 위해 발행한 채권에 대한 사회가치기금의 보증,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투자 유치시 이에 상응한 기금의 출자지원 등
 - 사회가치기금은 중개기관의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미인증 중개기관 등을 대상으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도 운영
 - * 중개기관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금융교육·컨설팅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금융·재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회가치기금이 중개기관을 지원
-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이후, 동법에 반영되어 있는 사회적금융기관 및 사회적경제지원 중개기관 지정제도와 운영상 연계 강화

다. 민간자금·금융기관의 사회적금융 참여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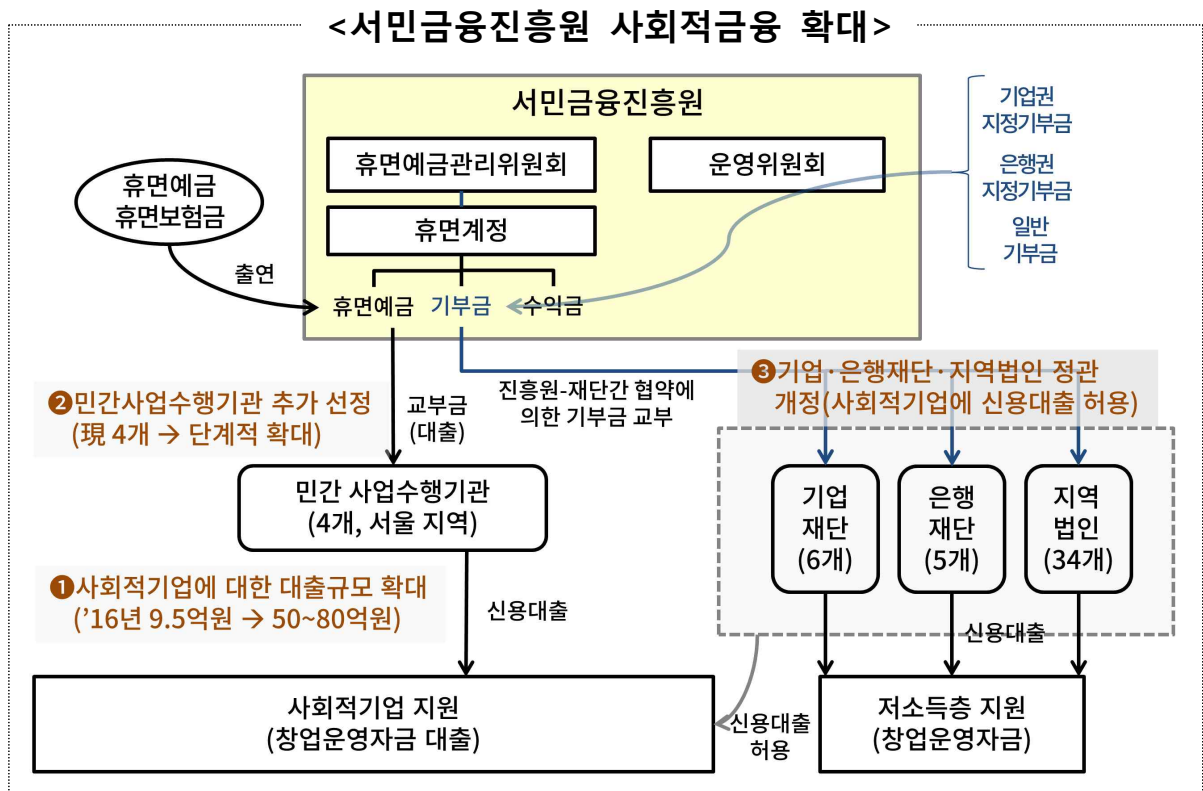
- 민간기반의 사회적금융 사례분석 등 연구용역을 거쳐 사회적경제기업의 특수성·다양성 등을 고려한 세제지원 등 지원방안 마련
- 은행 등 금융기관의 지역금융 강화를 위해 도입예정인 지역재투자제도 도입과정에서 사회적금융 관련 실적을 반영하는 방안 검토

◆ 사회적금융에 대한 투자경험을 축적하고 성공사례의 발굴·확산을 위해 정부·공공재원의 공급확대 및 제도개선 추진

가. 대출 확대

1] 서민금융진흥원 대출 확대(단계적으로 연 50~80억원까지 확대)

- 휴면예금 재원을 활용한 서민금융진흥원의 (예비)사회적기업 대출한도를 연간 50~80억원 규모까지 확대('16년 9.5억원 지원)
 - 사업역량 및 지역적 배분 등을 감안하여 민간사업수행기관을 추가 선정(現 서울 4개→서울 외 지역포함 단계적 확대)
- 별도 기부금으로 운영중인 진흥원의 기업·은행재단, 지역법인이 사회적기업에의 대출이 가능하도록 정관개정 협의 추진
 - 기업·은행재단, 지역법인이 서민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 대출시에도 기존 서민금융과 유사한 수준의 인센티브 부여



②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공급 확대('18년 400억원)

○ 사회적경제 관련 중소기업에 대해 정책자금* 지원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저금리(2.0~3.35%)·장기로 자금을 대출해주는 사업

- 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범위기준에 해당하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지원 확대('17년 200억원 → '18년중 350억원)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 창업, 성장, 긴급경영안정 및 채도약 등 기업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자금 지원

- 시설자금(10년, 45억원 이내), 운전자금(5년, 5억원 이내) 융자지원

○ 사회적경제 관련 소상공인에 대해 정책자금 지원

- '18년 소상공인 일반경영안정자금 중 사회적경제조직 전용자금으로 50억원 신규편성(자금수요에 따라 필요시 최대 100억원까지 확대)

- 사회적경제조직의 특성을 반영한 전용 대출 평가모형을 개발*('18년 상반기)하고, 직접대출 방식으로 지원('18년 하반기)

* '18년은 시범사업 성격으로 소상공인 협동조합에 대해 적용

-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수요를 고려하여 자금 구성 및 지원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조건(안) >

구 분	시설자금	운전자금
대출한도	2억원	1억원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분기별 변동금리)	
대출기간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대출상환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나. 보증 확대

① 신용보증기금 보증지원 확대('17년 66억원 → '18년 400억원)

- 신용보증기금에 사회적경제 지원계정을 신설하고 재정 등 지원을 통해 향후 5년내 최대 5,000억원까지 보증 공급 추진
- 별도 지원계정 신설前에도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보증을 확대 운영('18년중 400억원 신규 보증공급)

- 현재 운영중인 사회적기업·협동조합에 대한 보증사업의 기업당 보증한도, 운전자금 한도사정 특례* 등을 확대

* 매출액 등 재무지표가 부족하더라도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구분		현행	개선
기업당 보증한도		1억원	3억원
한도사정 특례	사회적기업	5천만원	1억원
	협동조합	3천만원	5천만원

- 마을기업·자활기업에 대한 보증 신상품*을 도입·운영

* (보증한도) 1억원, (한도사정특례) 3천만원 이하

- 취약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재무상황을 고려하여 우대된 심사 기준*을 적용하는 등 맞춤형 평가체계를 운영

* 매출액 대비 차입금 비중 항목, 신용등급현금흐름 등 신용도취약 항목 적용 배제 등

②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지원 확대('17년 97억원 → '18년 150억원)

- 현행 사회적기업·협동조합뿐만 아니라 마을기업·자활기업까지 특례보증 대상을 확대
- 보증한도는 조합·기업당 최대 4억원 이내로, 보증비율은 100% 전액보증으로 운영하고 보증요율은 연 0.5%로 우대
-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각 지역신보의 특례보증 실적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평가함*으로써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관리

* 평가결과는 중앙회의 재보증료 차등화 등에 반영

다. 투자 확대

① 성장사다리펀드 內 '사회투자펀드' 조성('18년 300억원)

- 성장사다리펀드 출자 및 민간·공공자금 매칭을 통해 우선 300억원 규모로 1차 조성('18년 상반기)

* '17.11.28 사회투자펀드 위탁운용사 선정 공고 → '사회적기업 투자 분야' 펀드는 위탁운용사 선정 완료('17.12.20), '임팩트 투자 분야'는 위탁운용사 접수중

- 투자 집행 상황을 보아가며 향후 5년간 최대 1,000억원까지 단계적 확충 추진

- 펀드 결성금액의 일정비율(60~70%)을 인증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등 다양한 사회적 목적을 지닌 기업에 투자

- 인증을 받거나 외부 민간전문기관의 '사회적성과 평가'를 거쳐 사회적성과가 일정 수준 이상인 기업을 투자대상으로 선정

- 일반 펀드 대비, 기준수익률은 낮추고 성과수익률은 높여* 운용사의 적극적인 투자 및 사회적가치 제고 활동 유도

* 운용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성과보수 지급 기준수익률을 차등 적용 (예 : 성장사다리펀드 2% 내외, 민간 4% 내외)

- 사회적기업의 성숙도·재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투자 방식과 대출 방식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

- 성장사다리 또는 희망출자자 출자금의 일정 비율(예: 50%, 30%) 이내에서 손실을 우선 부담하도록 하여 민간출자자 부담을 경감

- 인내자본으로서의 역할을 위해 펀드 존속기한을 장기(10년 내외)로 설정

② 사회적기업 모태펀드* 추가 조성('18년 75억+α)

* '11년부터 '15년까지 4차에 걸쳐 사회적기업에 투자하는 모태펀드 182억원 조성

- '18년 예산 75억원과 민간출자금(α)*으로 펀드를 조성·운용하고, '19년 이후에는 예산에 추가 반영을 검토

* 민간출자금은 총 출자금(예산 75억+α)의 30% 이상 모집

-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뿐 아니라 마을기업·자활기업 등으로 투자대상을 확대
- 출자금 총액의 60% 이상을 투자대상에 투자하고, 나머지도 가급적 사회적 기여가 가능한 일반 중소기업 등에 투자
- 펀드 재원별로 기준수익률을 차등화하여 민간출자 활성화 및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
(기준수익률 : 모태펀드 출자 0%, 민간 7%)

③ 소셜벤처*에 투자하는 **임팩트펀드** 조성·운용('18년 1,000억원)

* 재무적 성과와 사회문제 해결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혁신성·성장성을 보유한 기업

- 총 1,000억원 내외로 펀드를 조성하고, 벤처캐피탈(VC) 등이 펀드를 운용
 - 모태펀드에서 펀드에 80%를 출자(800억원 내외)하고, VC 등 운용사가 나머지 20%를 민간 투자자로부터 모집
 - 운용사 선정 시, 운용사가 투자기업의 사회적 성과(공공성)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제시토록 할 예정
 - 성과창출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투자금 회수에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펀드 존속기한을 장기로 설정
 - 모태펀드에서 손실을 우선 부담하고 및 민간투자자에 대해 콜옵션을 부여*하여 민간의 투자 참여확대를 유도
- * 이익발생시 민간투자자에게 모태펀드지분 매입권(콜옵션)을 부여

※ (참고) **사회투자펀드·사회적기업 모태펀드·임팩트 펀드 비교**

구 분	사회투자펀드	사회적기업 모태펀드	임팩트투자 펀드
주 재 원	성장사다리	모태펀드(고용부)	모태펀드(중기부)
투자대상	사회적경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등	소셜벤처
조성규모	'18년 300억원(5년내 최대 1,000억원 확대 검토)	'18년 75+ α 억원(모태 75억원, 민간 α)	총 1,000억원(모태 800억원, 민간 200억원)
존속기간	10년 내외	8년	10년 내외
특 징	투자 및 대출 혼용	지분, 전환사채 등 투자	지분 투자

4] 사회적기업의 **크라우드펀딩** 활용도 제고

- 사회적기업이 '업력제한*' 없이 주식형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 * 현행 크라우드펀딩은 업력 7년 이내의 중소기업(벤처기업 등 예외)만 참여 가능
→ 상당수 사회적기업이 인증기간 소요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
- 유망 사회적기업의 주식형 크라우드펀딩시 초기단계에서 투자하는 '마중물 펀드'를 마련·지원(성장사다리펀드, '18년중 50억원 규모)
 - 아울러, 중개업자의 크라우드펀딩 사이트에 사회적기업 전용 별도 페이지('사회적기업 전용관') 마련을 유도
- 예탁결제원-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간 협력을 통해 '사회적기업 발굴 프로젝트'를 개최*하여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도모
 - * 예탁결제원 나눔재단을 통해 중개업자의 실사비용 및 중개수수료 50% 지원을 추진(→연간 50개 내외의 사회적기업 지원 예상)
- '사회투자펀드'의 투자대상에 사회적기업 크라우드펀딩 중개실적이 우수한 중개업자를 포함 (⇨중개업자 기업발굴 노력 유도)

라. 협동·지역금융의 사회적금융 역할 강화

1 신협·신협중앙회의 사회적금융 역할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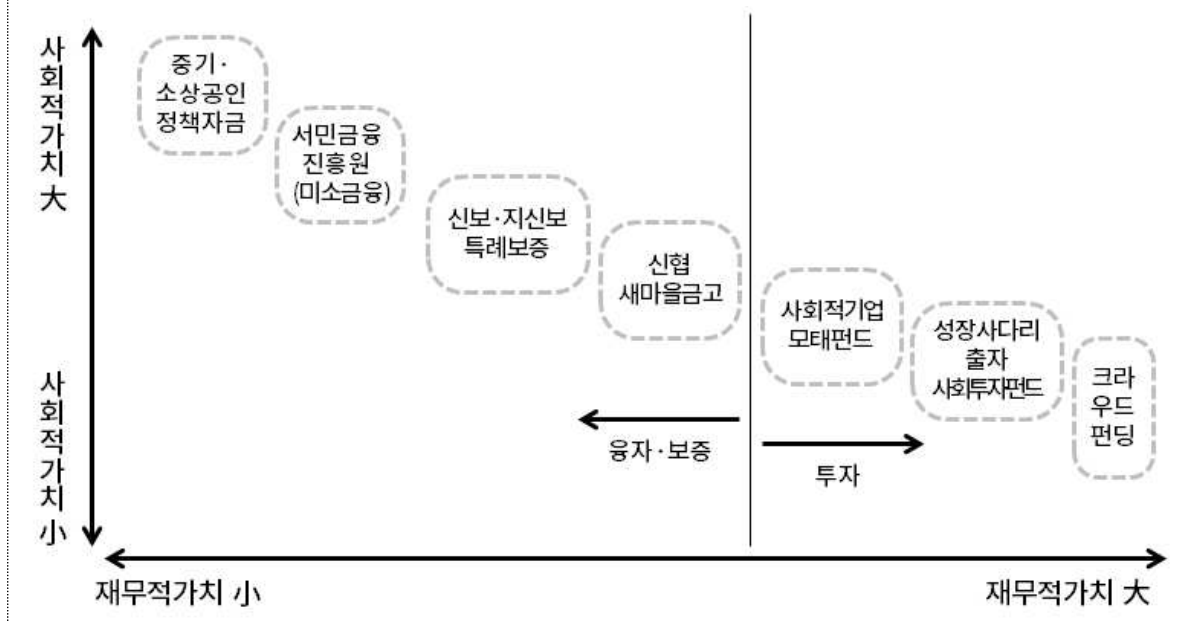
- 신협중앙회에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위한 전용기금을 설치 (年 100억원 규모)하여 사회적경제기업 대출 및 투자재원으로 활용
 - 전용상품 및 별도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신협을 통해 지원하되, 거액의 경우에는 중앙회가 직접 심사·지원하는 방안도 고려
- 신협의 사회적기업 등 他법인에 대한 출자 허용*, 사회적경제기업의 신협 법인조합원 가입유도 등 상호유대 강화

* 신협이 他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신협법 개정을 추진

2 새마을금고의 지역·사회적금융 역할 강화

- 지자체-새마을금고-중앙회 공동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지신보와 연계하여 보증부대출 등을 지원*하는 시범사업 실시
 - * 단, 지역내에서 보증부대출을 취급하는 금고의 범위를 제한하고, 해당 금고가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심사역량을 내재화하도록 유도
- 새마을금고가 사회적경제기업에 출자할 수 있도록 내규 개정

※ (참고) 사회적금융 사업주체별 중점 자금지원 대상



◆ 정부·공공부문의 사회적금융 공급확대과정에서 심사·평가 및 전달체계 등 인프라 구축을 병행·추진

가. 사회적금융 유관기관간 협력 강화

- ① 사회적금융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사회적금융협의회’ 설치·운영
 - ‘사회적금융협의회’에는 관계부처, 담당기관* 및 사회적경제 조직이 참여하여 상호 연계·협력을 강화
 - * 서민금융진흥원, 성장사다리펀드, 모태펀드, 신보·지신보, 신협, 새마을금고 등
 - 사회적금융 담당기관간 지원 연계 강화*, 지원정보 공유, 인프라 공동조성, 사후관리방안 등을 협의
 - * 사회적경제기업의 인큐베이팅·창업단계에서 성장·재기단계까지 유기적 연계
 - 정부보조금사업·인력·판로지원사업 등과도 연계지원이 가능하도록 사회적금융 담당기관과 기타 사업담당기관간 협력도 강화
- ② 사회적금융 유관기관간 대출·보증·투자 등 정보공유 확대
 - 지원내용·실적과 재무·사업 등 기업정보를 사회적금융 담당기관간 공유하여 중복지원 방지와 심사·평가방법 개선에 활용
 - 사회적금융 담당기관은 주기적으로 세부 금융지원 실적을 외부에 공개함으로써 금융지원의 투명성 제고
 - 사회적기업진흥원과 협력하여 기업정보투자마당내(IBK) 전용 페이지를 개설하고, 유망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보를 게재
- ③ 기업마당*내 사회적금융 지원메뉴를 개설하여 사회적금융 담당기관이 제공하는 금융지원 상품·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공시
 - *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중소기업 지원정보를 한 곳에 모아 알기 쉽게 제공하는 정책포털사이트(www.bizinfo.go.kr)

나. 사회적금융중개기관 육성

①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을 통한 자금지원 확대

- 서민금융진흥원의 민간 사업수행기관을 사업역량 및 지역적 배분 등을 감안하여 추가 선정(현재는 서울지역에만 4개)
 - 서민금융진흥원내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사회적기업 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업수행기관 선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 동 위원회에서 민간 사업수행기관 실적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우수기관에 대해 운영비 지원, 교부금 확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
- 사회투자펀드 등 사회적금융 관련 투자자금 운용시도 일반 운용사 외에 사회적금융에 전문성을 갖춘 중개기관의 참여 확대
- 신보·지신보 보증 및 기타 정책자금 운용에 있어서도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방안 검토

② 사회적금융중개기관과 사회적금융 담당기관간 연계 강화

- 중개기관의 법적형태 및 지원실적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주기적인 현황 조사*를 통해 중개기관 DB를 구축·운용
 - * 대출 중심 중개기관은 서민금융진흥원 투자 중심 중개기관은 성장사다리펀드에서 담당
 - 중개기관 DB는 사회적금융협의회 공동의 자산으로 구축하여 위탁 기관 및 지원 대상 선정 등에 활용
 - 사회가치기금 설치 이후에는 사회적금융중개기관 인증제도의 기초 자료로 활용
- 중개기관이 사회적금융협의회에 참여함으로써 업계의견 전달 및 네트워크·파트너십 형성을 촉진

다. 사회적 성과 평가체계 마련 등

① 사회적가치에 대한 객관적 평가체계 마련 → 금융지원에 활용

- 우선, 사회적금융 담당기관별로 사회적 목적 실현, 사회적 기여도 등을 반영한 맞춤형 심사·평가체계* 구축·운영

* 고용부의 '사회적가치지표' 등을 참고하여 고용안정, 지역사회 기여, 사회적 환원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특성을 반영하고 재무적 특성과의 적정 기준치를 설정

- 추후, 사회적금융 담당기관이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표준 사회적성과 평가체계' 마련

- 고용부 등 현재 사회적 평가를 담당하는 기관과 공동 작업으로 추진하고,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평가체계의 수용성을 제고

- 성과 측정시 자의성을 배제하고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량 가능한 성과(outcome) 위주의 평가체계를 마련

-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포괄하면서 측정대상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평가지표를 구성하고 각각 객관적 측정방법을 마련

- 개별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 가치도를 등급으로 평가·표시할 수 있는 사회적가치 등급제로 발전시키는 방안 검토

② 정부·공공재원의 사회적금융 선별기능 보완

- 정부·공공재원으로 지원시 민간자금과의 매칭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선별기능 보완을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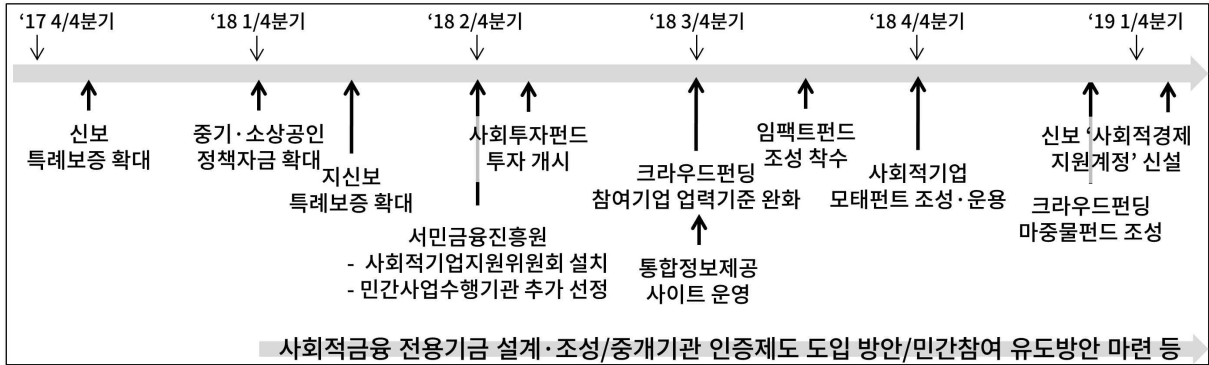
- 신보과 지역신보의 보증에 있어서도 부분보증을 점진적으로 도입하여 민간 금융기관의 선별기능 활용

※ 이러한 시장의 선별 기능의 활용은 민간의 사회적금융 투융자 경험을 확대시키는 효과도 존재

③ 사회적금융 담당기관별로 사회적금융을 통해 창출한 사회적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성과보고서로 작성하여 외부 공개

V. 향후 추진 일정

- '18년중 사회적경제기업에 총 1천억원 이상의 금융지원(대출 450억원, 보증 550억원 등)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



- 개별 정책과제는 다음 일정에 따라 추진하고, 주기적으로 사회적 금융협의회를 통해 이행 현황 및 성과를 관리

<과제별 추진 일정>

정책과제	조치사항	일정	부처
1. 사회적금융시장 조성 지원			
① 사회적금융 전용기금 조성		'18년중	기재부
② 사회적금융중개기관 인증제도 도입		'18년중	기재부
③ 민간자금·금융기관의 사회적금융 참여 유도		'18년중	기재부
2. 사회적금융 공급 확대			
가. 대출 확대			
① 미소금융 금융지원 확대	▸ 미소금융 재원 활용 확대	'18.2분기	금융위
	▸ 기업·은행재단 등 정관 개정	'18.2분기	금융위
② 중기·소상공인 정책자금 확대	▸ 중기 정책자금 확대	'18.1월	중기부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확대	'18.1월	중기부
나. 보증 확대			
① 신보 보증지원 확대	▸ 사회적경제 지원계정 신설	'19년	금융위
	▸ 특례보증 지원 확대	'17.10월	금융위
② 지신보 보증지원 확대	▸ 특례보증지원 확대	'18.2월	중기부

다. 투자 확대

① 사회투자펀드 조성	▸ 사회투자펀드 조성·운용	'18.2분기	금융위
② 사회적기업 모태펀드	▸ 사회적기업 모태펀드 조성·운용	'18.4분기	고용부
③ 임팩트펀드 조성	▸ 임팩트펀드 조성·운용	'18.하반기	중기부
④ 크라우드펀딩 활용도 제고	▸ 참여기업 업력기준 완화	'18.6월	금융위
	▸ 마중물 펀드 조성·운용	'18.12월	금융위
	▸ 사회적기업 발굴 프로젝트	'18.상반기	금융위

다. 협동·지역금융 역할 강화

① 신협역의 역할 강화	▸ 사회적경제조직 지원 기금 설치	'18년중	금융위
	▸ 신협의 타법인 출자 허용	'18년중	금융위
	▸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상품 마련	'18.6월	금융위
② 새마을금고 역할 강화	▸ 새마을금고 사회적경제기금 조성	'18년중	행안부
	▸ 지자체 시범사례 발굴	'18년중	행안부
	▸ 새마을금고의 사회적경제기업 출자 허용	'18년중	행안부

3. 사회적금융 인프라 확충

가. 사회적금융 유관기관간 협력 강화

① 사회적금융협의회 설치	▸ 사회적금융협의회 설치·운용	'18년중	금융위
② 유관기관간 정보공유 확대	▸ 세부 금융지원 실적 공개	'18.하반기	관계부처
	▸ 기관간 지원실적 등 공유 확대	'18.하반기	관계부처
	▸ 기업미당내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정보 게재	'18.6월	중기부

나. 사회적금융중개기관 육성

①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을 통한 자금지원 확대	▸ 민간사업수행기관 추가 선정	'18.2분기	금융위
	▸ 기타 중개기관 활용 확대 검토	'18년중	금융위/중기부
② 사회적금융중개기관과 유관기관간 연계 강화	▸ 사회적금융중개기관 실태조사	'18.하반기	협의회
	▸ 사회적금융중개기관 협의회 참여	'18.하반기	협의회

다. 사회적 성과 평가체계 마련 등

① 사회적성과 평가체계 마련	▸ 담당기관별 맞춤형 평가체계 운영	'18년중	관계부처
	▸ 표준 평가체계 마련	'19년	협의회
② 정부공공재원의 선별기능 보완	▸ 신보지신보 선별기능 보완방안 검토	'19년	금융위/중기부
③ 성과보고서 작성·공개	▸ 담당기관별 성과보고서 작성·공개	'19년	관계부처